

7. 채무부담행위

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

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사업건에 900,000,000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